

신한 새희망홀씨 II 대출

서민의 새로운 희망이 되는 금융씨앗

신한 새희망홀씨란?

신한 새희망홀씨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희망의 싹을 키우고 계신 우리 서민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기를 위한 신한은행 서민고객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연소득3천5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천5백만원 초과 4천5백만원이하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

- ※ 대출대상 제외고객 : • 총부채 30백만원 초과인 고객(신청건 및 담보대출 제외)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등재된 고객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법인등 당행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제외되는 고객

대출한도

신용등급에 따라 소득의 80%~130%까지로 최소 1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본 대출한도는 서민금융지원 상품(새희망드림) 한도 포함하여 최대 3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12개월(최장 10년까지, 1년 이내 단위로 연장가능)
- 원(리)금분할상환 : 12개월 이상 60개월까지(거치기간은 약정기간의 1/3범위내에서 최대 1년까지 가능)

기본금리

구분	서민대출신용등급	변동금리	고정금리
기본금리	1등급	금융채(1년) + 4.0%	7.0%
	2등급	금융채(1년) + 6.0%	9.0%
	3~9등급	금융채(1년) + 8.25%	10.2%

우대금리 (최대 4.15%p)

구분	내용	
우대금리	1. 우대플랜 1	1)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1가구 만 19세미만 3자녀),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장애인 각 0.2%p 우대 2) 청년층(만29세이하)/고령자(만65세이상) 0.1%우대 3) 금융교육이수자 0.1% 우대 ※ 우대플랜1 우대금리 항목 합산하여 최대1% 까지 우대
	2.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감면	만기일시상환 ※ 단, 만기연기시 과거 약정기간중 연체내역 없는 경우 연도별 0.5%p ※ 최대 2.0%p(최대 5년간 누적) 분할상환 대출 ※ 단, 약정기간(분기별)중 연체내역이 없는 경우 분기별 0.15%p ※ 최대 2.85%p

최종금리

최저 연 3.98%(2021.05.04 현재)

※ 상기 금리는 신규시 희망 AS 1등급 변동금리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대출 취급시 고객님의 신용등급 및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주민등록증, 소득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 우대금리 적용서류 등

중도상환해약금

이 상품은 서민고객 지원 대출상품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 본 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상품에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상품을 가입(계약)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본 상품내용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대출금리는 차주 신용도별 차등적용되며 대출 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신용정보관리 대상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은 당행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상기 대출 조건은 당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율은 연 3%, 연체가산이율은 연 15%로 합니다.
-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당행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여신비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품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 4조의 2 대출계약철회에 따라 서면, 전화,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계약의 철회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 ※ 본 상품은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금리인하요구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홈페이지(www.shinhan.com) 참조 또는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1-10859-1호 (2021. 05. 17 ~2022. 05. 17)

